

202학년도 제4차
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위원정수 | 11인 | 재적위원수 | 11인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
1. 일 시 : 2026.1.28.(수) 10시 30분
2. 장 소 : 대구예술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
3. 위원 출석현황

| 구 분 | 참 석 | 불참석 | 참 석 의 원 | 불참의원 |
|-----|-----|-----|--|------|
| 위 원 | 10명 | 1명 | 이근배, 백진우, 이강문, 김성기, 윤종희, 김종문, 정영주, 김원진, 신기훈, 윤원형 | 이혁화 |

4. 안건

- 제1호의 안 :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자문
- 제2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자문
- 제3호의 안 : 2025, 202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(안) 자문
- 제4호의 안 : 임의건축적립금 용도 전환에 관한 건
- 제5호의 안 :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(안) 자문

5. 회의내용

가. 개회

- ‘간사’가 재적의원 중 10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.
- ‘의장’이 202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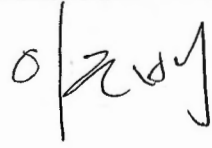



나. 안건 심의

- 제1호의 안 :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자문
- 제안설명

- ‘의장’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 - ‘간사’가 이번 추경은 2025회계연도 최종 예산(안)으로 1차 추가경정 책정된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에 따라 증·감을 주로 하였다고 하며 예산총괄표를 기본으로 설명하다.
- 교비회계 총 수입이 6,672,219천원으로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365,649천원이 증가하였고 총 지출은 수입 예산에 맞추어 책정했다고 하며 변동된 예산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‘의장’이 의원들에게 제1호의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.
- ‘이강문’의원이 원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다.
- ‘의장’이 의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‘이강문’의원의 동의와 ‘김성기’의원의 재청이 있어 ‘의장’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| | | | | |
|--------|---|---|--|---|
| 서 명 |  |  |  |  |
|--------|---|---|--|---|

□ 제2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자문

- 제안설명

- '의장'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잉여금의 개념 및 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작년과 변동이 없다고 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김종문'의원이 잉여금 처리원칙은 작년과 동일하기에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다.
- '의장'이 의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'김종문'의원의 동의에 '정영주'의원의 재청이 있어 '의장'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□ 제3호의 안 : 2025, 202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(안) 자문

- 제안설명

- '의장'이 제3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때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, 2025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12,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이 30,000천원이며, 2026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18,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은 60,000천원이라고 하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한다고 하다. 다만, 하반기 법인부담금액이 변동될 때 대학부담금의 변동도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하다. 그리고, 법인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 과정이 있기에 법인에 지급이 가능한 범위 이하로 전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의장'이 의원들에게 3호의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.
- '의장'이 의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'김종문'의원의 동의에 '윤종희'의원의 재청이 있어 '의장'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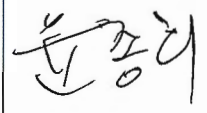
□ 제4호의 안 : 임의건축적립금 용도 전환에 관한 건

- 제안설명

- '의장'이 제4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간사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대학 재정이 지출대비 수입의 부족으로 교직원 보수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적립재원이 비등락금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₩982,266,969원 중 ₩600,000,000원을 특정목적적립금 경상경비보존(보수)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에 적용해 보수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의장'이 의원들에게 3호의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.
- '김종문'의원이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에 적용하는 것이냐고 질문하다.

| | | | | |
|--------|---|---|--|---|
| 서 명 |  |  |  |  |
|--------|---|---|--|---|

- ‘간사’가 다음 안건인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에 적용을 했다고 하다.
- ‘백진우’의원이 비등록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얼마 안남았는데 교육부에 요청하여 등록금으로 적립된 남은 기금의 사용허가를 요청해야 할 거 같다고 하다.
- ‘간사’가 이미 교육부에 문의했고 용도 외 사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다.
- ‘의장’이 의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‘김원진’의원의 동의와 ‘김성기’의원의 재청이 있어 ‘의장’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□ 제5호의 안 :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(안) 자문

- 제안설명

- ‘의장’이 제5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‘간사’가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(안)의 수입이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등록금수입만으로는 지출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수 및 고액지출예산을 삭감하였고 해당 예산은 5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할 때 원 요구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다. 2026회계연도 수입총계가 7,115,815천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3,521,090천원, 비등록금회계가 3,594,725천원이라고 하며, 지출은 감소한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항목별 예산내역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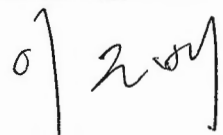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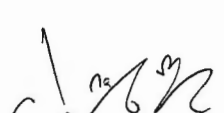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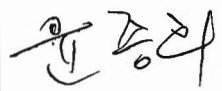
- ‘의장’이 의원들에게 3호의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.
- ‘김중문’의원이 올해 예산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다.
- ‘간사’가 외국인 유학생 수가 주요 수입원으로 하기에 예상하는 인원이 입학한다면 괜찮겠지만 현저히 떨어지는 입학생 수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하기가 힘들고 5월에 준비할 추가경정 예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
- ‘의장’이 2026회계연도 본 예산(안) 자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‘김성기’의원의 동의안에 ‘정영주’의원의 재청이 있어 ‘의장’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6. 의결사항

- 제1호의 안 :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- 제2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- 제3호의 안 : 2025, 202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- 제4호의 안 : 임의건축적립금 용도 전환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- 제5호의 안 : 2026회계연도 본 예산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
7. 폐회선언

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2024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.

| | | | | |
|--------|---|---|--|---|
| 서 명 |  |  |  |  |
|--------|---|---|--|---|

[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.]

2026. 1. 28.

| | | | | |
|------|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
| 참석인원 | 의장 | 이근배 (인) | 의원 | 김종문 (인) |
| | 의원 | 백진우 (인) | 의원 | 정영주 (인) |
| | 의원 | 이강문 (인) | 의원 | 김원진 (인) |
| | 의원 | 김성기 (인) | 의원 | 윤원형 (인) |
| | 의원 | 윤종희 (인) | 의원 | 신기훈 (인) |
| | | | 작성자 | 김광진 (인) |